

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

제정 2011.01.01

6차 개정 2025.02.2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 및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2조와 학칙 제45조의3에 의거 우송정보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2.24.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5.2., 2025.2.24.>

1. 삭제 <2025.2.24.>
2. 삭제 <2025.2.24.>
3. <개정 2022.5.2.> 삭제 <2025.2.24.>

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, 학생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 한다. <개정 2025.2.24.>

③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미만이 되도록 하고,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며 관련전문가에는 학부모 위원 또는 동문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 <신설 2025.2.24.>

제3조(위원위촉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1.2.22.>

1. 교직원 위원 중 교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, 직원은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 <개정 2021.02.22.>
 2.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자 <개정 2021.2.22.>
 3. 관련전문가 위원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총학생회장과 총무처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자 <개정 2021.2.22.>
- ② 위원의 선출과 관련된 절차 및 과정 등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또한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 자격상실) ① 교직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직 및 퇴직
2. 징계에 의한 직무해제
3. 사임서를 제출한 때
4. 위원이 그 직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

② 학생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학 및 졸업
2. 학칙 및 총학생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징계처분

3. 3개월 이상의 교환 학생으로 파견

4.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

제6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총장이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 <개정 2021.2.22., 2025.2.24.>

②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선임하고,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. <개정 2025.2.24.>

제7조(사무관장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하며,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2.22., 2025.2.24.>

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2.22.>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2.5.2>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 <신설 2022.5.2>

1.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: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통지 <신설 2022.5.2>

2. 회의 자료: 회의 개최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통지 <신설 2022.5.2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22.5.2>

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5.2>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5.2.24.>

1.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

2.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의 등록금 산정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21.2.22.>

4. 고등교육법 제11조제4항 관련 등록금 면제·감면에 관한 사항 <신설 2021.2.22.>

제10조(자료요청 및 협조) 위원회는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대학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2.24.>

제11조(비밀유지)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5.2.24.>

제12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2.24.>

② 회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회의록은 참석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3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 <신설

2021.2.22.>

제13조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5.2.24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21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예산편성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